

대상자 및 교육안내

★ 교육대상

등록장애인
국가유공상이자 (1-4급)

★ 신청방법

기관별 전화문의 → 본인방문 → 상담 → 접수
준비물

- 장애인등록증 (복지카드) 및 장애인증명서

★ 안내사항

운전교육

- 무료

시험 응시료

- 본인부담

교육종별

- 1종 보통, 2종 보통(공통)

※ 기타 면허종별 교육 가능 여부는 각 센터별 문의

운영시간

- 평일 09:00 - 18:00 /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휴무

★ 교육내용

학과 교육

- 학과교육이 필요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

장내기능 교육

- 차량기기 조작 방법

- 장내기능시험 1:1 장내기능 코스

도로주행 교육

- 도로주행 관련 안전 교육

- 도로주행 1:1 코스

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조건 (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)

★ 시력 (시각장애 포함)

1종 면허

- 좌/우 시력 각각 0.5이상, 양안 0.8이상

_단안

- 좋은 눈 0.8이상 (적성검사 주기 3년으로 단축)

- 수평시야 120도 이상, 수직시야 20도 이상

-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 없을 것

2종 면허

- 양안 시력 0.5이상, 단안 시력 0.6이상

★ 청력 (청각장애 포함)

1종, 2종 보통 모두 가능

1종 대형, 특수면허는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것

※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것

★ 신체장애 (지체, 뇌병변 장애)

운동능력측정에 합격한 자

※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동능력측정 기기로

신체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평가

★ 발달 (지적, 자폐성), 정신장애

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합격된 자

※운전면허시험장에서 대상자의 운전면허 취득 및

운전가능 여부 판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(일정은 시험장 별로 상이)

★ 그 외 장애

별도의 취득 조건은 없으며, 상담 후 진행

장애인 등 시험 및 교육 절차

운전면허
취득과정

운전교육
지원과정

응시원서접수

상담및접수



교통안전교육



신체검사



학과시험



기능시험



도로주행시험



운전면허발급



운동능력측정
차량및운전보조장치평가

학과시험교육

장내기능교육

연습면허발급
도로주행교육

사후관리

